

춘천지방법원 2021. 12. 22 선고 2021가단267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
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 주식회사 (합병전 상호 주식회사 C)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12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도 양구군 D 전 1,104㎡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87. 5. 11. 접수 제186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하라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윤이나

별지